

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2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 1. 제정이유

중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총칙(안 제1조 ~ 2조)
- 나.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 ~ 10조)
- 다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24조)
  -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, 예비사회적기업 발굴·지원
  - 경영·시설비·재정 지원, 우선구매 및 조세감면 등
  -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

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제2항
- 나.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

##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10. 25 ~ 11. 13(의견 없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4. “사회서비스”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연계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
###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

**제3조(설치)**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, 생활지원국장, 건설도시국장,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
2. 위촉직 위원은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,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수당과 여비)**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3장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

**제11조(사회적기업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
2.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6.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2조(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경영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퇴직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설비 등 지원)**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대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.

**제15조(재정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을 결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업명칭,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2.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
3.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
4.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
5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 구성(유·무급 포함)에 관한 사항
7.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

④ 재정지원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국가 또는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(교부방법)**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한다. 다만,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을 따른다.

**제17조(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 
②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보고 및 검사 등)**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「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우선구매 등 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 
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20조(조세감면)**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
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21조(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)**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**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·운영 지원
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

**제23조(홍보 등)**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3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

**제2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805)

**1. 의안명** :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. 12. 1(수)

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12. 6(월)

라. 위원회 심사 : 2010. 12. 13(월)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총칙(안 제1조~2조)
-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~10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24조)
  -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, 예비사회적기업 발굴·지원
  - 경영·시설비·재정 지원, 우선구매 및 조세감면 등
  -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

### 4. 근거법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
  
-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
  -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”설치·운영과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
  -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지원, 민간기업의 등의 참여확충, 시설비 및 재정지원, 지방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  
-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